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운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를 정비하여 자료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가 입수하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정보의 비치장소를 현행화(안 제15조의12제2항)

운항관리자가 입수하여야 하는 항로상황에 관한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정보 비치장소의 명칭을 현행화함

나. 민원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조정(안 제16조의2제1항)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의 제출기한을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최초 운항 전까지로 조정함

다. 해운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를 정비(안 별표 5)

해운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해운업자로부터 제출받는 자료 중 반기별 재무제표를 연도별 재무제표로 대체하고, 용선료 자료를 제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예정
-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다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에 대하여는”을 “서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재하고”를 “기록하고”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예상수지”를 “예상 수입과 지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연되거나”를 “늦어지거나”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를 “늦어지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한”을 “지원한”으로, “선령”을 “선령(船齡)”으로,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인·허가”를 각각 “인가·허가”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선령(船齡)기준”을 “선령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과한 여객선으로서”를 “넘는 여객선으로서”로, “초과한 여객선”을 “넘는 여객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산하되”를 “기산(起算)하되”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기항지”를 “기항지(寄港地)”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으려는 경우에는”을 “받으려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제한”을 “기록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구대조표”를 “신구대조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별지 제7

호의2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구대비표”를 “신구대비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수”를 “수수(收受)”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인도·인수·보관”을 “인도, 인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를 “갖춰 두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관리하여야”를 “작성·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를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로 한다.

제10조의4제3항 중 “게재하는”을 “신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절차에 관하여는”을 “절차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2 서식”을 “별지 제9호의2 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내항여객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의2 서

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내항여객운송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한다.

제15조의4제4호 중 “교량”을 “다리”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운항관리규정에 적합한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5조의6제2항 중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을 “해사안전감독관에게”로 한다.

제15조의7제1항 중 “표기하여야”를 “표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선할”을 “승선(乘船)할”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를 “기록내용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송부하여야”를 “보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재된”을 “기록된”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5조의8제1호 중 “초과하여”를 “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성방가”를 “고성방가(高聲放歌)”로, “해하는”을 “해치는”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조의10제2항제2호 중 “실형의 신고를 받고”를 “실형을 신고받고”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집행유예 신고를 받고”를 “집행유예를 신고받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5조의12제1항제6호 중 “감항성”을 “감항성(堪航性)”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승선하여야”를 “승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선내”를 “선박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항관리실에 비치하여야”를 “운항관리센터에 갖추 두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항로상황”을 “항행정보 등 항로상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동태”를 “동태(動態)”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을 “않는다고 인정하는”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5조의13제1항 중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를 “직무수행을 지도·감독해야”로, “직원으로 하여금”을 “직원에게”로 한다.

제15조의14제1항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되는 경우나”를 “인정하거나”로,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5조의15제2항 전단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5조의16제1항 중 “30 이내”를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에 대하여는”을 “서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임시 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을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으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로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초과하지”를 “넘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를 “변경설치신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외”를 “국외”로, “초과한”을 “넘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를 “(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를 “명확하게 적은”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을 “해상화물운송사업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함”을 “않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사본”을 “않은 것이어야 한다)사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상수지”를 “예상 수입·지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은 경우에는”을 “받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에 관하여는”을 “처리”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전자메일”을 “전자우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출한”을 “찾은”으로, “예치하여야”를 “예치해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치하여야”를 “예치해야”로,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1호의2 서식”을 “별지 제21호의2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래내역서”를 “거래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1호의3 서식”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6조의3 중 “별지 제21호의4 서식”을 “별지 제21호의4서식”으로, “제21호의5 서식”을 “제21호의5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6조의4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제2호 중 “관할관청의”를 “관할 관청의”로, “관할관청에”를 “관할 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대해서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26조의6제3항 중 “인증 여부”를 “인증할지”로 한다.

제26조의8제2항 중 “게재하고”를 “신고”로 한다.

제26조의11제1항 중 “용대선”을 “용대선(傭貸船)”으로, “기제한”을 “기록한”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별표 5 제5호의 제출 또는 보고서류란 중 “거래내역서”를 “거래명세서”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나목 중 “증빙 자료”를 “증명자료”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내역”을 “명세”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나목 중 “반기별”을 “연도별”로 하며, 같은 란 바목 중 “현황, 용선료”를 “현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1조의2(여객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2.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 구역이 폐위되지 <u>아니한</u> 여객선	다. ----- ----- <u>않은</u> -----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확인해야

서류는

않는

해야

1. · 2. (현행과 같음)

③ -----
----- 기
록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
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4. (생략)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
도별 예상수지

6. (생략)

④ 삭 제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 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 공모) ① 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 기록하고-----
첨부해야 -----

3. 4. (현행과 같음)

5. -----
-- 예상 수입과 지출

6.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 _____
_____ 늦어지거나 _____

_____ 늦어지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_____
_____ . _____

⑥ -----

----- 발 급 해 야 -----

제3조(사업자 공모) ① -----

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해야 -----.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생략)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u>선령(船齡)기준</u> 은 20년 이하로 한다.	② ----- <u>선령기준</u>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u>초과한 여객선으로서</u>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u>초과한 여객선</u>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 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검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③ ----- <u>넘는 여객선으로서</u> ----- ----- <u>넘는 여객선</u>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 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u>내항 여객운송사업</u> 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검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u>아니한다</u> .	④ ----- <u>내항 여객운송사업</u> ----- ----- <u>않는다</u>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u>기산하되</u> ,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⑤ ----- <u>기산(起算)하되</u>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항로고시) ① 해양수산	제5조의2(항로고시) ① -----

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 신청 등)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항지(寄港地) 고시해야

②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 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기록해야 ---.

③ -----

----- 발급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

----- 제출하여
-----.

② -----
----- 기록해
야 -----.

8. 9. (생략)	8. 9. (현행과 같음)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u>비치하여</u>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u>하여야</u> 한다.	③ ----- ----- ----- ----- ----- ----- ----- <u>갖춰 두어</u> ----- ----- -- <u>해야</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u>작성·관리하여야</u> 한다.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① ----- ----- ----- ----- ----- ----- ----- <u>작성·관리해야</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u>비치하여</u> <u>야</u>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u>내항</u>	② ----- ----- ----- ----- <u>갖춰 두어</u> ----- ----- ----- ----- ----- ----- <u>내항</u>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① ② (생략)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의 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정보로 한정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u>게재하는</u>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③ ----- ----- ----- ----- ----- ----- ----- ----- ----- <u>신는</u> ----- ----- ----- ----- -----.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④ ----- ----- ----- ----- ----- ----- ----- ----- ----- <u>해야</u> -----.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① -----

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3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u>작성해야</u> ----- ----- ----- <u>내항여객운송사업</u> ----- ----- ----- -----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 ----- <u>별지 제10호의2서식</u> ----- ----- ----- <u>점검</u> ----- <u>해야</u> ----.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① ----- ----- ----- ----- ----- ----- ----- <u>제출해야</u> ----- ----- ----- ----- -----

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u>내항여객운송사업</u> ----- ----- ----- <u>제출해야</u> ----- ----- 1. ~ 5.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② 삭제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 ----- ----- ----- ----- -- <u>갖춰 두어야</u> --.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 ----- ----- ----- ----- -----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4. 항로상 위해 요소(<u>교량</u> , 방파제 등)의 변경 5. 6. (생략)	4. ----- <u>다리</u> ----- ----- 5. 6.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① ----- -----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u>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u>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 ----- <u>운</u> <u>항관리규정에 적합한지</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u>없는</u> <u>한</u>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u>발급하</u> <u>여야</u> 한다.	② ----- ----- ----- ----- ----- ----- ----- <u>없으</u> <u>면</u> ----- ----- ----- ----- <u>발급해야</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생략)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u>해사안전감독관</u> 으로 하여금 제	② ----- ----- ----- <u>해사안전감독관</u> 에게 -----

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차량선적권·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u>표기하여야</u> 한다.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차량선적권·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 ----- ----- ----- ----- ----- <u>표기해야</u>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u>승선할</u>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u>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u> 한다.	② ----- ----- <u>승선</u> <u>(乘船)할</u> ----- --- <u>기록내용을 확인해야</u> ---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u>송부하여야</u> 한다.	③ ----- ----- ----- ----- <u>보내야</u> -----.
④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	④ ----- ----- ----- ----- ----- -----

의 성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 기록된 ----- ----- 발급해야 ----- --.
⑤ 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 ----- ----- ----- 제출해야 ----- ----- 확인해야 ----- -----.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 ----- ----- -----.
1.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1. ----- 넘어 ----- -----
2.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2. --- 고성방가(高聲放歌) --- -----

해하는 행위 2의2.·3. (생 략)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해치는 -- 2의2.·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 ----- ----- ----- ----- 해야 -----.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 략)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현행과 같음) 2. ----- 실형을 선고받고 ----- ----- ----- 않은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3. ----- 집행유예

<u>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u> 에 있는 사람	<u>를 선고받고</u> ----- -----
4. 삭 제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 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 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 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이 끝나지 <u>아니한</u> 사람	5. ----- ----- ----- ----- ----- ----- <u>않은</u> -----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 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 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 부 및 복원성 등 <u>감항성</u>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6. ----- ----- <u>감항성(堪航 性)</u>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u>승선하여야</u> 할 승무원의 승 선 여부 확인	8. <u>승선해야</u> -----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선장의 <u>선내</u>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10. ----- <u>선박 안</u> -----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입항·출항 보고를 받지 <u>아</u>	12. ----- <u>않</u>

<u>니한</u> 경우의 역호출(逆呼出) 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u>은</u>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 도록 <u>운항관리실에 비치하여야</u> 한다.	② ----- ----- ----- ---- <u>운항관리센터에 갖추 두어 야</u>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항로상황</u>	4. <u>항행정보 등 항로상황</u>
5. 그 밖에 여객선의 <u>동태</u> 등 여 객선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5. ----- <u>동태(動態)</u> ----- --
③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그 도착예정시간을 넘겨도 입항하 지 <u>아니하는</u> 등 정상적으로 운 항되지 <u>아니한다고 인정되는</u> 경 우 지체 없이 사고 유무를 확인 · 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u>보고 하여야</u> 한다.	③ ----- ----- -- <u>않는</u> ----- ---- <u>않는다고 인정하는</u> ---- ----- ----- <u>보고 해야</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 도·감독 등) ① 법 제22조제3 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 도·감독 등) ① ----- -----

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 직무수행 을 지도·감독해야 ----- ----- ----- ----- ----- ----- ----- 직원에게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이행 상태 확인)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이행 상태 확인) ① ----- ----- ----- ----- 확인해야 ----- -----.
② 운항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② ----- ----- -----

가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인정하거나----- ----- 있으면 - ----- ----- 보고해야 -----.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① (생략)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조치해야 ----- ----- 있으면 -- ----- -----.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뒤편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① ----- ----- ----- ----- ----- ----- ----- 30-----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5.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인정하
는 -----

----- 밝혀
진 ---

4. 5. (현행과 같음)

④ -----

-- 관한 -----

-----.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 제출해야 -----.

-----.

1. (현행과 같음)

2. -----

----- 않는다---

② -----

----- 확인해야 -----.

----- 서류는 -----

----- 않는 -----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야 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 기록해야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발급해야 한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서류는 외국국적 선박(「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 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	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	1. ----- 선박검사증	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	-----
서{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서[대한민국 -----	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	-----	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	-----
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	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	-----
선박은 제외한다)에 관한 변	-----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해야 -----.
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②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	제16조의3(등록조건) -----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기록해야 -----.
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	③ -----
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	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	-----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 내항화물운송사업-----	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	-----
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 발급해야 -----
3. 예선(曳船) 1척이 동시에 부	3. -----	다.	-----.
선 2척 이상을 예인하지 아니	----- 앎을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	④ -----
할 것	---	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	-----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	----- 넘지 -----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 내항 화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 내항화	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	---. -----
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물운송사업 -----	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	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	-----	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 넘을 -----.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② (생략)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① (생략)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선박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 변경설치신고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내항 화물운송사업 -----.

1. ----- 않는 -----

2. ----- 국외 -----

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4. ~ 6. (생략)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

----- 넘은 -----

3. ----- 지난 -----

4.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출해야 -----.

⑤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	-----
6.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	6.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적증서(선박관리업 및 선박	-----	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	-----
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	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	-----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	-----	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	-----
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u>않는다</u> ---	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② -----	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	-----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확인하</u>	----- <u>확인해</u>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	⑤ -----
<u>여야</u>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	<u>야</u> -----.	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	-----
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	-----	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	-----
하지 <u>아니하는</u> 경우에는 해당	--- <u>않는</u> -----	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	-----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u>하여</u>	----- <u>해야</u>	등록증을 <u>발급하여야</u> 한다.	----- <u>발급해야</u> -----.
<u>야</u> 한다.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	⑥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	③ -----	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	-----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기</u>	----- <u>기</u>	의 사항을 <u>기록·관리하여야</u> 한	----- <u>기록·관리해야</u> ----
<u>재하여야</u> 한다.	<u>록해야</u> ----.	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	2. -----	⑦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⑦ -----
진계획 및 <u>예상수지</u>	----- <u>예상 수입·지출</u>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④ -----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
에 따른 등록신청을 <u>받은 경우</u>	----- <u>받으면</u> ---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	-----

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	-----
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
해양수산청장에게 <u>제출하여야</u>	----- <u>제출해야</u> ----
한다.	----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	갱신 신청) ① -----
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	-----
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	-----
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
날의 1개월 전까지 <u>별지 제17호</u>	----- <u>별지 제17호서</u>
<u>서식</u> 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	<u>식</u> -----
록증원본과 제22조제1항 각 호	-----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	-----
산청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 <u>제출해야</u> -----.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	-----
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u>아니할</u>	----- <u>않을</u> ----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③ -----
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
경우 그 <u>처리에 관하여는</u> 제22	----- <u>처리</u> 는-----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

한다.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운중	④ -----
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	-----
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	-----
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
등록갱신 신청을 <u>하여야</u> 한다는	----- <u>해야</u> -----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	-----
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
날의 2개월 전까지 <u>휴대폰</u> 에 의	----- <u>휴대전화</u> -----
한 문자전송, <u>전자메일</u> , 팩스,	----- <u>전자우편</u> -----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	-----
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
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	-----
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	-----
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	-----
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	-----
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	-----
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
보증보험에 <u>가입하여야</u> 한다.	----- <u>가입해야</u>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② -----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	-----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 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u>아니할</u> 수 있다.	----- ----- ----- <u>않을</u>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 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 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u>인정되는</u> 경우	2. ----- ----- ----- ----- ----- ----- <u>인정하는</u> --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 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 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 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u>하여야</u> 하 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 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 업보증금을 <u>인출한</u> 경우에는 1	③ ----- ----- ----- ----- ----- ----- ----- <u>해야</u> ----- ----- ----- ----- ----- ----- ----- <u>찾은</u> -----

개월 이내에 다시 <u>예치하여야</u> 한다.	----- <u>예치해야</u> ---- ----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 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 라 <u>예치하여야</u> 하는 영업보증 금, <u>가입하여야</u> 하는 보증보험 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 ----- -- <u>예치해야</u> ----- -- <u>가입해야</u> ----- ----- -----.
1.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 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 만인 <u>경우</u> : 1억원 이상	1. ----- ----- -- <u>경우</u> : -----
2.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u>경우</u> : 2억원 이상	2. ----- ---- <u>경우</u> : -----
3. 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u>경</u> <u>우</u> : 3억원 이상	3. ----- <u>경</u> <u>우</u> : -----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 려는 자는 <u>별지 제21호의2</u> 서식 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u>제출</u> <u>하여야</u> 한다.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① ----- ----- ----- ----- ----- <u>별지 제21호의2</u> 서식- ----- ----- <u>제출</u> <u>해야</u> -----.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u>거</u>	1. ----- <u>거래</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u>대해서는</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 ----- <u>관한</u> ----- ----- ----- <u>관한 사항은</u> ----- -----.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① · ② (생 략)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u>인증 여부</u> 를 결정해야 한다.	③ ----- ----- ----- ----- ----- ----- ----- <u>인증할지</u>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① (생 략)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u>게재하고</u> ,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② ----- ----- ----- <u>신고</u> ----- -----

해야 한다.	-----.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u>용대선</u> 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u>기재한</u>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① ----- ----- <u>용대선(傭貸船)</u> ----- ----- ----- <u>기록한</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수료) ① (생 략)	제29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 인지로 <u>납부하여야</u> 한다.	② ----- ----- <u>납부해야</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u>해야</u> ----- -----.
1.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